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19.08.01.

개정 2021.06.2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관련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용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판매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라. 성과수수료 :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투자자문에 관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4조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만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86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성과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2.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각각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전문사모집합 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③ 투자자문 수수료 및 투자일임 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 계약서 및 투자일임 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제5조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의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투자광고)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같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지침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